

「군포도시공사 보수규정」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 희



2020년 5월 6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30호

군포도시공사 보수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

군포도시공사 보수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제수당 지급기준)에 제3호 가목 중 “매년 2월(신입생일 경우 3월), 5월, 8월, 11월의”을 “매년 3월(신입생일 경우 4월), 6월, 9월, 11월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영기획부
입 안 자	직 위	경영기획부장
	성 명	이 현 동
	담당 성명 (전화번호)	임 선 경 (390-7604)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제수당 지급기준) <생략> 3. 자녀학비보조수당 가. -----<u>매년 2월(신입생일 경우 3월),</u> <u>5월, 8월, 11월의</u> ----- ----- 나. <생략> 다. <생략> 라. <생략> 마. <생략></p>	<p>제2조(제수당 지급기준) <현행과 같음> 3. 자녀학비보조수당 가. -----<u>매년 3월(신입생일 경우 4월),</u> <u>6월, 9월, 11월의</u> ----- ----- 나. <현행과 같음> 다. <현행과 같음> 라. <현행과 같음> 마. <현행과 같음></p>